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4 선고 2017가합552378(본소), 2018가합556018(반소)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0. 1. 15 선고 2019나2022416(본소), 2019나2022423(반소)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4 선고 2017가합552378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정우근, 김훈욱

피고 1. 주식회사 A

2. B

피고(반소원고) 3.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연

담당변호사 도진석

변론 종결 2019. 3. 7.

판결 선고 2019. 4. 4.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074,299,841원 및 그 중

- 1,036,002,710원에 대하여 2017. 4. 27.부터, 10,149,380원에 대하여 2017. 5. 23.부터, 21,186,819원에 대하여 2017. 6. 2.부터, 4,306,932원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각 2017. 8. 8.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958200분의 438201 지분과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2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2016. 10. 24. 체결된 매매예약을 각 취소한다.
3. 피고 주식회사 A와 원고(반소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958200분의 438201 지분과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1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A, B이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및 피고 B의 연대보증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1	2013. 4. 18.	892,500,000 (833,000,000)	2014. 4. 17. (2017. 4. 14.)	D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 자금대출	이하 '제1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2	2013. 5. 21.	306,000,000 (195,500,000)	2014. 5. 20. (2017. 5. 19.)	E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 자금대출	이하 '제2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3	2016. 5. 20.	50,000,000	2017. 5. 19.	F	G 주식회사	상거래 담보보증	이하 '제3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4	2016. 5. 20.	60,000,000	2017. 5. 19.	H	I 주식회사	상거래 담보보증	이하 '제4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5	2016. 8. 26.	40,000,000	2017. 5. 10.	J	K 유한회사	상거래 담보보증	이하 '제5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2) 제1 내지 5차 보증약정은, ① 피고 A의 사업장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신청이 있는 때에는 원고가 보증원금 상당의 사전구상권을 가지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②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로 하여금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보전비용, 위약금 등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3)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피고 A는 제1, 2차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50,000,000원, 36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고, 제3, 4, 5차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G 주식회사, I 주식회사, K 유한회사와 각 거래관계를 유지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는 2017. 1. 6. 사업장 권리침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원고는 2017. 4. 27. 중소기업은행에 1,036,346,400원, 2017. 5. 23. K 유한회사에 10,291,810원, 2017. 6. 2. G 주식회사에 21,344,149원, 2017. 6. 16. I 주식회사에 4,306,932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는 제1, 2차 신용보증약정의 대위변제금 1,036,346,400원에 대하여 343,690원을, 제3차 신용보증약정의 대위변제금 21,344,149원에 대하여 157,330원을, 제5차 신용보증약정의 대위변제금 10,291,810원에 대하여 142,430원을 각 회수하여 대위변제금 잔액은 합계

1,071,645,841원 [= 제1, 2차 신용보증약정의 대위변제금 잔액 1,036,002,710원(= 1,036,346,400원 - 343,690원) + 제3차 신용보증약정의 대위변제금 잔액 21,186,819원(= 21,344,149원 - 157,330원) + 제4차 신용보증약정의 대위변제금 4,306,932원 + 제5차 신용보증약정의 대위변제금 잔액 10,149,380원(= 10,291,810원 - 142,430원)]이고, 위 회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2,300원이며, 원고가 회수하지 못한 위약금은 492,950원, 채권보전비용 등의 대지급금은 2,158,750원이다.

다.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의 피고 A에 대한 채권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피고 A에게 2014. 9. 30. 597,000,000원, 200,000,000원, 2014. 10. 1. 50,000,000원, 2014. 10. 28. 750,000,000원, 2014. 10. 29. 250,000,000원, 2014. 11. 3. 250,000,000원, 2014. 11. 19. 300,000,000원, 2016. 3. 18. 100,000,000원 합계 2,497,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라. 피고 C의 근저당권설정 및 매매예약 체결

1) 피고 A는 2016. 6. 21.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A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958200분의 438201 지분과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C, 채무자 피고 A, 채권최고액 3,5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6. 6. 21. 접수 제4031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피고 A는 2016. 10. 24.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6. 10. 24. 접수 제77179호로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의 근저당권설정

피고 A는 2017. 2. 1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A, 채권최고액 1,608,6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7. 2.

17. 접수 제1258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의 배당 내역 등

1) 피고 A의 채권자 L의 강제경매신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M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그 후 주식회사 N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7. 4. 5. 같은 법원 ○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중소기업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7. 4. 18. P 임의경매개시결정이 각 이루어졌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이 2018. 2. 23. 9,250,500,000원에 매각되어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등기와 이 사건 가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

2) 경매법원은 2018. 3. 28.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9,238,929,742원에 대하여, ① 1순위로 임금채권자인 Q, R, S에게 각 3,002,910원, 2,003,340원, 2,700,000원을, ② 2순위로 임금채권자인 근로복지공단 경인 지역본부에 31,853,750원을, ③ 3순위로 T유한회사에 5,400,000,000원을, ④ 4순위로 U 주식회사에 500,000,000원을, ⑤ 5순위로 주식회사 V에 170,000,000원을, ⑥ 6순위로 주식회사 W에 117,299,409원을, ⑦ 7순위로 주식회사 X에 600,000,000원을, ⑧ 8순위로 피고 C에게 2,412,070,333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피고 C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2018. 4.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배당이의의 소(2018가합101214)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호증, 을다 제3 내지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중 피고 A, B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제1 내지 5차 신용보증약정의 주채무자로서, 피고 B은 그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1,074,299,841원(= 대위변제금 1,071,645,841원 + 회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2,300원 + 위약금 492,950원 + 대지급금 2,158,750원) 및 그 중 제1, 2차 신용보증약정의 대위변제금 잔액 1,036,002,710원에 대하여 제1, 2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일인 2017. 4. 27.부터, 제5차 신용보증약정의 대위변제금 잔액 10,149,380원에 대하여

제5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일인 2017. 5. 23.부터, 제3차 신용보증약정의 대위변제금 잔액 21,186,819원에 대하여 제3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일인 2017. 6. 2.부터, 제4차 신용보증약정의 대위변제금 4,306,932원에 대하여 제4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일인 2017. 6. 1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7. 8. 8.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 중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이미 제1 내지 4차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었고,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16. 6. 21.로부터 약 6개월 후이자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일인 2016. 10. 24.로부터 약 2개월 후인 2017. 1. 6. 피고 A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 A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실제로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매매예약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다만, 제5차 신용보증약정은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에 비로소 체결되어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 중 제5차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한 부분은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적극재산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을다 제13호증의 1, 을다 제15호증의 1 내지 12, 을다 제16호증의 4, 5, 6, 을다 제2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Y, 주식회사 Z, 주식회사 AA, AB 주식회사, 주식회사 AC, 주식회사 AD, 주식회사 AE, AF 주식회사, AG, 주식회사 AH, 주식회사 AI, 주식회사 AJ, 주식회사 AK, AL 주식회사, 주식회사 AM, AN, AO 주식회사, AP, AQ약국, 주식회사 AR, AS, AT약국, 주식회사 AU, 주식회사 AV, 주식회사 AW, 주식회사 AX, 주식회사 AY, 주식회사 AZ, BA 주식회사, 주식회사 BB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는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16. 6. 21. 및 이 사건 매매예약일인 2016. 10. 24. 당시 다음 표 기재와 같은 가액의 적극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각 부동산	9,234,197,820
2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보통예금채권	2,631,908(2016. 6. 21. 기준)0(2016. 10. 24. 기준)
3	어음채권	108,226,000(2016. 6. 21. 기준)0(2016. 10. 24. 기준)
4	기계장치	812,490
5	차량운반구	30,433,523
6	비품	13,935,936
7	시설장치	8,504,702
8	B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20,000,000
9	BD약국에 대한 매출채권	30,524,168(2016. 6. 21. 기준)0(2016. 10. 24. 기준)
10	AT약국에 대한 매출채권	17,669,110(2016. 6. 21. 기준)0(2016. 10. 24. 기준)
11	주식회사 Z에 대한 매출채권	7,307,895(2016. 6. 21. 기준)775,141(2016. 10. 24. 기준)
12	주식회사 AM에 대한 매출채권	4,594,937(2016. 6. 21. 기준)0(2016. 10. 24. 기준)
13	AB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채권	4,183,938(2016. 6. 21. 기준)0(2016. 10. 24. 기준)

1	이 사건 각 부동산	9,234,197,820
14	주식회사 AJ에 대한 매출채권	5,779,152(2016. 6. 21. 기준)0(2016. 10. 24. 기준)
15	BE약국에 대한 매출채권	11,315,825(2016. 6. 21. 기준)0(2016. 10. 24. 기준)
16	주식회사 AI에 대한 매출채권	67,173,544(2016. 6. 21. 기준)11,993,951(2016. 10. 24. 기준)
17	AQ약국에 대한 매출채권	9,485,650(2016. 6. 21. 기준)0(2016. 10. 24. 기준)
18	주식회사 BF에 대한 매출채권	13,887,836(2016. 6. 21. 기준)0(2016. 10. 24. 기준)
19	AL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채권	5,577,928(2016. 6. 21. 기준)0(2016. 10. 24. 기준)
20	주식회사 AX에 대한 매출채권	574,456(2016. 6. 21. 기준)0(2016. 10. 24. 기준)
21	AN에 대한 매출채권	12,980,217(2016. 6. 21. 기준)1,430,384(2016. 10. 24. 기준)
22	AP에 대한 매출채권	22,712,947(2016. 6. 21. 기준)4,139,304(2016. 10. 24. 기준)
23	주식회사 AK에 대한 매출채권	8,171,500(2016. 6. 21. 기준)0(2016. 10. 24. 기준)
24	주식회사 AW에 대한 매출채권	4,031,425(2016. 6. 21. 기준)1,003,800(2016. 10. 24. 기준)
25	주식회사 BG에 대한 매출채권	8,661,616(2016. 6. 21. 기준)2,222,974(2016. 10. 24. 기준)
26	AS에 대한 매출채권	6,736,777(2016. 6. 21. 기준)689,390(2016. 10. 24. 기준)
27	BA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채권	6,899,078(2016. 6. 21. 기준)2,789,496(2016. 10. 24. 기준)
28	주식회사 AH에 대한 매출채권	71,795,069(2016. 6. 21. 기준)790,919(2016. 10. 24. 기준)
29	주식회사 BH에 대한 매출채권	5,414,352(2016. 6. 21. 기준)1,865,824(2016. 10. 24. 기준)
30	주식회사 BI에 대한 매출채권	7,967,588(2016. 6. 21. 기준)0(2016. 10. 24. 기준)
31	주식회사 AD에 대한 매출채권	22,419,514(2016. 6. 21. 기준)0(2016. 10. 24. 기준)
32	주식회사 AA에 대한 매출채권	25,463,192(2016. 6. 21. 기준)0(2016. 10. 24. 기준)
33	주식회사 Y에 대한 매출채권	63,645,186(2016. 6. 21. 기준)2,845,360(2016. 10. 24. 기준)
34	주식회사 AR에 대한 매출채권	4,841,032(2016. 6. 21. 기준)0(2016. 10. 24. 기준)
35	AO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채권	28,311,236(2016. 6. 21.

1	이 사건 각 부동산	9,234,197,820
		기준)25,994,884(2016. 10. 24. 기준)
36	주식회사 AV에 대한 매출채권	8,198,566(2016. 6. 21. 기준)0(2016. 10. 24. 기준)
37	주식회사 AE에 대한 매출채권	12,277,722(2016. 6. 21. 기준)2,979,724(2016. 10. 24. 기준)
38	주식회사 AY에 대한 매출채권	5,259,110(2016. 6. 21. 기준)0(2016. 10. 24. 기준)
39	주식회사 AU에 대한 매출채권	40,029,694(2016. 6. 21. 기준)0(2016. 10. 24. 기준)
40	AF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채권	22,390,915(2016. 6. 21. 기준)0(2016. 10. 24. 기준)
41	주식회사 AC에 대한 매출채권	9,243,049(2016. 6. 21. 기준)0(2016. 10. 24. 기준)
42	주식회사 AZ에 대한 매출채권	8,120,196(2016. 6. 21. 기준)0(2016. 10. 24. 기준)
43	재고물품(의약품, 화장품)	1,649,978,362
합계	11,652,365,161(2016. 6. 21. 기준)11,017,383,984(2016. 10. 24. 기준)	

(2) 피고 C는 BJ은행, BK은행(계좌번호 BL)에 대한 각 보통예금채권도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다 제13호증의 2, 3, 4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A가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16. 6. 21. 및 이 사건 매매예약일인 2016. 10. 24. 당시 위와 같은 보통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C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정기예금채권도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등 참조), 을다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A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120,000,000원의 기업부금채권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채권은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 C는 앞서 인정된 어음채권 이외에 150,000,000원의 어음채권이 추가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을다 제15호증의 13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 C는 120,626,070원의 장기성예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을다 제1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A가 만기환급금이 존재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만기가 도래하였다거나 해지환급금이 존재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피고 C는 앞서 인정된 매출채권 이외에 BM(BN), BO(BP), BQ(BR), BS(BT약국), BU(BV약국), BW(BX약국), BY(BZ약국), CA(CB), CC(CD), CE(CF), CG(CH)에 대한 각 매출채권도 피고 A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다 제23,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A가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16. 6. 21. 및 이 사건 매매예약일인 2016. 10. 24. 당시 위 각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극재산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다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N, U 주식회사, BJ은행, 주식회사 CI, X, 주식회사 CJ, AB 주식회사, I 주식회사, G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16. 6. 21. 및 이 사건 매매예약일인 2016. 10. 24. 당시 피고 A의 소극재산이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6,637,826,224(2016. 6. 21. 기준)7,180,437,406(2016. 10. 24. 기준)
2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대출채무	300,000,000
3	주식회사 W에 대한 대출채무	88,211,102
4	주식회사 X에 대한 대출채무	500,000,000
5	BJ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700,000,000
6	CJ에 대한 대출채무	290,000,000
7	U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422,390,458(2016. 6. 21. 기준)389,772,064(2016. 10. 24. 기준)
8	주식회사 V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170,000,000
9	L에 대한 채무	300,000,000

1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6,637,826,224(2016. 6. 21. 기준)7,180,437,406(2016. 10. 24. 기준)
10	피고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50,000,000
11	주식회사 CK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200,000,000
12	CL주식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0,000,000
13	CM 주식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0,000,000
14	피고 C에 대한 차용금채무	2,497,000,000
15	주식회사 CI에 대한 대출채무	0(2016. 6. 21. 기준)2,380,000,000(2016. 10. 24. 기준)
16	주식회사 N에 대한 채무	0(2016. 6. 21. 기준)140,000,000(2016. 10. 24. 기준)
17	AB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131,123,494(2016. 6. 21. 기준)0(2016. 10. 24. 기준)
18	I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19,531,600(2016. 6. 21. 기준)4,306,932(2016. 10. 24. 기준)
19	G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43,698,829(2016. 6. 21. 기준)22,344,149(2016. 10. 24. 기준)
20	주식회사 AH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52,423,357(2016. 6. 21. 기준)62,324(2016. 10. 24. 기준)
21	AL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7,619,139(2016. 6. 21. 기준)0(2016. 10. 24. 기준)
22	AO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38,458,328(2016. 6. 21. 기준)26,011,453(2016. 10. 24. 기준)
합계	12,468,282,531(2016. 6. 21. 기준)15,258,145,430(2016. 10. 24. 기준)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A가 CN 주식회사에게 부담하는 리스료채무도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 채무액은 차량취득원가인 208,329,950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CN 주식회사의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 A가 2014. 12. 31. CN 주식회사와 사이에 차량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차량시설대여계약에서 정한 리스차량 취득원가는 208,329,9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차량시설대여계약은 피고 A가 2017. 2. 5.부터 리스료 지급을 연체함으로써 2017. 5. 12. 해지되었고, 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은 58,356,394원이었으나, 피고 A는 2017. 2. 5. 전에는 리스료를 미납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 A가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에는 CN 주식회사에 대하여 연체 리스료채무 또는 리스료 연체로 인한 위약금채무를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A가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CN 주식회사에 대하여 208,329,950원의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피고 A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비교해보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넘어서는 것이 계산상 명백하여 피고 A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바,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매매예약은 피고 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인 피고 C에게 담보나 대물변제조로 제공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고 C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는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이 사건 매매예약은 피고 A에 대한 채권자인 피고 C의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피고 C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하나,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바(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380 판결 등 참조), 피고 A와 피고 C의 관계,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C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하므로, 피고 C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반소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C가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C의 사해행위취소청구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2) 판단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M 강제경매절차에서 2017. 1. 20. 피고 C에게 임차인통지서가 송달된 사실,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장이 2017. 8. 8. 피고 C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 C가 2018. 8. 16. 비로소 반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러나 한편,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원고가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피고 A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A의 매출채권 및 재고물품을 증명하기 위하여 2017. 12. 4.부터 2018. 3. 27.까지 사이에 피고 A의 거래처들을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한 사실, 이에 대한 회신이 2017. 12. 12.부터 2018. 4. 2.까지 도착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이와 같은 사실을 고려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C의 사해행위취소권이 곧바로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가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나아가 피고 A의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까지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C가 피고 A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2,497,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는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17. 2. 17. 무렵 다음 표 기재와 같은 가액의 적극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각 부동산	9,234,197,820
2	기계장치	2,000
3	차량운반구	5,391,494
4	비품	7,353,202
5	시설장치	4,139,997
6	AP에 대한 매출채권	1,735,810
7	BG에 대한 매출채권	63,759
8	주식회사 AH에 대한 매출채권	115,000
9	주식회사 Y에 대한 매출채권	54,494
10	재고물품(의약품, 화장품)	1,649,978,362
합계	10,903,031,938	

또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17. 2. 17. 무렵 피고 A의 소극재산이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7,590,093,821
2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대출채무	500,000,000
3	주식회사 W에 대한 대출채무	87,059,698
4	주식회사 X에 대한 대출채무	500,000,000
5	BJ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700,000,000
6	CJ에 대한 대출채무	290,000,000
7	U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389,772,064
8	주식회사 V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170,000,000
9	L에 대한 채무	300,000,000
10	피고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50,000,000
11	주식회사 CK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200,000,000
12	CL주식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0,000,000

1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7,590,093,821
13	CM 주식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0,000,000
14	피고 C에 대한 차용금채무	2,497,000,000
15	주식회사 CI에 대한 대출채무	2,380,000,000
16	주식회사 N에 대한 채무	140,000,000
17	I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4,306,932
18	G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21,344,149
합계	15,839,576,664	

나) 판단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A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비교해보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넘어서는 것이 계산상 명백하여 피고 A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바,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고 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인 원고에게 담보조로 제공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원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채무자가 처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처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여기서 피담보채권액이라 함은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이미 발생하여 있는 채권금액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17. 2. 17.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이 9,234,197,820원인 사실, 2017. 2. 17. 기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채권최고액) 합계는 7,076,831,762원(= 중소기업은행 5,400,000,000원 + U 주식회사 389,772,064원 + 주식회사 V

170,000,000원 + 주식회사 W 87,059,698원 + 주식회사 X 500,000,000원 + 주식회사 N 140,000,000원 + 주식회사 CI 390,000,000원)인 사실(본소에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된 이상, 피고 C의 피고 A에 대한 대여금채권 2,497,000,000원은 위 피담보채권액 산정에서 제외한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가액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에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A의 대표인 피고 B이 계속적 사업 운영을 위해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을 제안하여 원고가 이를 수용하였을 뿐이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수익자인 원고의 악의는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반복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피고 C의 변론재개신청에 관한 판단

가. 변론재개신청의 요지

피고 C가 2019. 3. 15. 피고 A에 대하여 600,000,000원의 채무를 면제하겠다고 통보함으로써 피고 A는 소급하여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734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C는 이 사건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점을

충분히 주장 및 증명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변론종결 이후에야 채무면제를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A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815,917,370원(= 12,468,282,531원 - 11,652,365,161원) 초과하고,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피고 A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4,240,761,446원(= 15,258,145,430원 - 11,017,383,984원) 초과하는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여 피고 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A는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이 이 법원의 판단을 뒤집을 만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C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본소와 반소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도영

판사이효은

판사정지원

별지